

강릉원주대학교 기술평가위원회 규정

규칙 제 789호, 제정 2005. 8.24.
규칙 제 843호, 개정 2007. 1.11.
규칙 제1030호, 개정 2009. 3.18.
규칙 제1267호, 개정 2012. 8. 6.
규칙 제1768호, 개정 2018. 6.15.
규칙 제2084호, 개정 2021. 2.24.
규칙 제2191호, 개정 2023.11.08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산학협력단 정관과 지식재산권 규정에 따라 협력연구소 설립, 산학교육,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에 대한 자문을 위한 기술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3.11.08.>

제2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기술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산학협력단장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)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2.2.24.>
<개정 2023.11.08.>

②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.

③ 산학기획과장 및 산학협력부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산학협력부단장은 부위원장이 된다. <개정 2012.8.6., 2018.6.15., 2022.2.24.>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3조(위원회의 직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.

1. 학교기업이나 산학연구소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
2. 산학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
3. 기술평가 및 이전에 관한 사항
4. 발명자가 신고한 발명의 판단(직무발명, 자유발명)
5. 발명의 권리승계에 대한 관리비용 지원 방안
6. 지적재산권의 출원, 등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
7. 등록된 지적재산권의 유지료 납부 여부
8. 기술료 분배에 관한 사항
9. 등록된 특허의 유지관리 기간 결정
10. 지적재산권을 출자하여 창업하는 사업 <신설 2012.8.6.>
11. 기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

제4조(회의)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.

제5조(팀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활동을 위하여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팀은 기술협력팀과 기술평가팀으로 한다.

③ 팀의 설치, 임무,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간사) 위원회에 소관 사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부칙 <규칙 제789호, 2005.8.24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규칙 제843호, 2007.1.11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규칙 제1030호, 2009.3.18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규칙 제1267호, 2012.8.6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규칙 제1768호, 2018. 6.15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규칙 제2084호, 2021. 2.24.>

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규칙 제2191호, 2023.11.08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